KOSHA GUIDE

C - 114 - 2020

함의 상승과 하역 작업 이전에 적재함 덮개 개방을 금지하여야 한다.

- (18) 운전자는 적재물을 하역한 다음 적재함을 올린 상태 및 적재함 문짝을 개방한 상태에서의 유행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19) 운전자와 유도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01-8호(크레인작업 표준신호지침)의 신호방법을 숙지하여 신호하여야 한다.

6.2.3 작업 종료 시 준수사항

- (1) 운전자는 차량을 주차 시 주변작업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 주차 차량이 불필요한 위험요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(2) 운전자는 경사면을 주차를 피하고, 부득이 경사면에 주차하는 경우 밀림방지 조치(고임목 등)를 하여야 한다.
- (3) 운전자는 주차한 다음 차량의 엔진의 시동을 정지하고 운전석 이탈시 주차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키를 가지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여야 한다.
- (4) 운전자는 일일점검을 통해 차량의 이상유 · 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부록 1: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자체검사 결과표

부록 2: 덤프트럭 주요 점검사항